#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5호

안 건 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4,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피심인의 일반 현황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직원 수

####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21. 6. 8. ~ '23. 1. 16.)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1.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

피심인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를 대상으로 ○○ 지원(○○○○) 서비스를 이용인에게 제공하면서 '23. 1. 13. 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 집·보유하고 있다.

구분	항목	기간	건수
고객정보		3년간 보관	15,426건
홈페이지 회원정보		3년간 보관	3,360건
	계		18,786건

# 나. 주요 경과

일시	주요 경과
2021. 6. 8.	국가인권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심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조치 요청
2022. 10. 2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피심인에 대한 현장 조사
2023. 1.12~13.	KISA 및 국가인권위, 피심인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

#### 다. 기초 사실

# 1)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은 ○○시스템(이용자 상담 및 ○○관련 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21. 3월까지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항목 중 수행업무의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6.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2.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6조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 하는 자(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 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4호)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하 '고시') 제5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7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8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위법성 판단

#### 가.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21.3월까지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 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에 대한 내역을 보관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항목 중 수행업무의 내용을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다.

####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위반행위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미공개	보호법 §26②	§28②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접근권한)	보호법 §29	§30①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의 내역을 보관하지 않은 행위 (고시§5③)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암호화)	보호법 §29	§30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고시§7②)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접속기록)	보호법 §29	§30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항목 중 수행업무의 내용을 누락한 행위 (고시§8①)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4항제5호 및 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래 2개의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 600만원과 200 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 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더.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4항제5호	200	400	800

#### 나. 과태료의 가중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과태료의가중)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2]의 가중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과태료 가중) [별표2] 가중기준에 따라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인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인 60만원을 가중한다.

< 과태료의 가중기준(제8조 관련) >

기준	가중사유	가중비율
위반의	1.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정도	2. 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 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

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 지침 [별표1]의 감경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 또는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감경한다.

#### < 과태료의 감경기준(제7조 관련) >

기준	감경사유	감경비율
조사	1. 과태료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기준금액의 50% 이내
협조· 자진	2.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기준금액의 40% 이내
시정 등	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인전되는 경우	기준금액의 30% 이내

<sup>※</sup>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감경은 기준금액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및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 가중·감경을 거쳐 총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제75조제2항제6호	600	60	300	360	
법 제26조(개인정보 처리위탁) 제2항 위반	제75조제4항제5호	200	ı	100	100	
계		800	60	400	460	

파심인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100분의 20을 감경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준용)

#### V. 결론

피심인의「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2항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4항제5호 및 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 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3년 4월 12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